

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대한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(인)

(부상등급 변경신청인) 귀하

의상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기존 인정결과	심사위원회	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		
	인정결정일	년 월 일		
	증서 번호	제 호	기존 부상등급	
변경신청 인정결과	심사위원회	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		
	변경 결정일	년 월 일		
	변경된 부상등급	급		
	보상금지급액	원	기존등급보상금	원
			변경등급보상금	원
	지원내용	구분	지원대상	신청기간
		의료급여	1~6급 의사상자 본인	결정 통보일(교육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보호 사유 발생 일을 말합니다)로부터 3년 이내
교육보호		1~6급 의사상자 본인 및 그 자녀		
취업보호		1~6급 의사상자 본인 및 그 가족		

안내 사항

위의 부상등급 변경신청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